



# 「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」 일부 개정(안) 행정예고

환경부 자료 제공

## 1. 개정이유

합성수지 포장재 분리배출 표시가 전 품목으로 확대(15.7.1)에 따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가. 분리배출 표시 간소화

○ 종이와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로 일체를 이루는 다중포장재는 별도의 지정승인 절차 없이 종이에 일괄표시 가능(안 제5조제5호)

○ 수입제품 중 외포장재 내부에 다수의 내포장재의 재질이 같은 경우 그 재질을 하나로 표시 가능(안 제7조 후단 신설)

나. 분리배출 표시 면제

○ 사후관리 서비스(A/S) 부품 등 일반 소비자를 거치지 않고 의무생산자가 직접 회수·선별하여 배출하는 포장재(안 제6조제5호 신설)

##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

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5호 단서 중 “있다”를 “있으며 종이재질의 포장재와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로 일체를 이루는 다중포장재는 별도의 지정승인 절차 없이 종이재질의 포장재에 일괄표시를 할 수 있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6호 본문 중 “여타의”를 “그 밖의 다른”으로 하며, 같은 호 단서 중 “여타의 재질”을 “그 밖의 다른 재질(종이재질은 합성수지가 양면에 첩합된 경우만 해당한다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7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외포장재 내부에 다수의 내포장재의 재질이 같은 경우 그 재질을 하나로 표시할 수 있으며, 외포장재가 종이재질의 포장재인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승인 절차 없이 일괄표시를 할 수 있다.



현 행	개 정 안
<p>여타의 재질을 도포 또는 첩합 등의 방법으로 혼합사용한 복합재질포장재의 재질표시는 별표 제2호의 플라스틱 또는 비닐류의 표시재질 중 “OTHER”로 표시한다.</p> <p>7. 외포장재가 밀봉된 상태로 수입되는 제품 중 내포장재에 분리배출 표시를 하는 경우 손상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하여는 재질명 등을 외포장재에 일괄표시를 할 수 있다. (후단 신설)</p> <p>8. (생략) (신설)</p> <p>제6조(분리배출 표시의 적용예외) 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무표시포장재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포장재는 분리배출 표시를 아니할 수 있다.</p> <p>1. (생략) 2. 내용물의 용량이 30밀리리터 또는 30그램 이하인 용기 3. 4. (생략)</p> <p>(신설)</p> <p>②(생략)</p> <p>제8조(재검토기한)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,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.</p>	<p>—————그 밖의 다른 재질(종이재질은 합성수지가 양면에 첩합된 경우만 해당한다) —————.</p> <p>7. _____.</p> <p>_____. 이 경우 외포장재 내부에 다수의 내포장재의 재질이 같은 경우 그 재질을 하나로 표시할 수 있으며, 외포장재가 종이재질의 포장재인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승인 절차 없이 일괄표시를 할 수 있다.</p> <p>8. (현행과 같음) 9. 분리배출표시의 기준일은 제품의 제조일로 적용한다</p> <p>제6조(분리배출 표시의 적용예외) ① _____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 2. _____포장재 3.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사후관리 서비스(A/S) 부품 등 소비자를 거치지 않고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직접 회수·선별하여 배출하는 포장재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 8 조 ( 재 검 토 기 한 ) _____ _____</p> <p>—2018년 —————.</p>